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7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박수현・임오경・복기왕

위성곤ㆍ어기구ㆍ윤건영

임호선 · 정진욱 · 이개호

서삼석 • 박지원 • 신정훈

오세희 · 조계원 · 이재관

양부남 • 문금주 • 이광희

한병도 • 민형배 • 권칠승

최민희 · 황정아 · 이원택

송재봉 · 전현희 의원

(2691)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 및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

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산자의 이익 보호' 를 추가함(안 제1조).
- 나. 양곡수급계획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제16조의3 신설).
- 라.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량"을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식량"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3(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 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 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 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가격을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보장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제16조의4(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양곡가격보장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4.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 5.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 6.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 제1조(목적) ------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 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식량---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 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 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 가격을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보장제도의 차액(기준가격 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비율을 제16 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의4(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
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

<신 설>

-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 양곡가격보장제도의 대상 품
 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4.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 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 5.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 면적의 조정
- 6.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

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 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 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
- 5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